

특약 개정 대비표

1. 약관명: 『Easy-One Pack(이지원 팩)통장』 특약
2. 변경 시행일 : 2025년 7월 1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 내용 : 급여인정 기준 확대

<신구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	개정 후		비 고
제 7 조 우대서비스의 제공		제 7 조 우대서비스의 제공		사명변경 급여인정 기준확대에 따른 내용변경
①<생략>		①<좌동>		
② 1.~2. <생략> - KEB하나은행 CD/ATM을 이용한 KEB하나은행 계좌의 출금수수료 면제		② 1.~2. <좌동> - <삭제>하나은행 CD/ATM을 이용한 <삭제>하나은행 계좌의 출금수수료 면제		
③<생략>		③ <좌동>		
1.<생략>		1.<좌동>		
		<삭제>		
인정기준	● <u>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(원화계정)에 입금시 아래사항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</u> - <u>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가 포함 된 경우</u> (적요: 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급료, 상여, 성과, 보너스, 월보수, SALARY, PAY, BONUS) - <u>급여일 ± 1 영업일에 급여 이체 시 (급여일 사전 등록)</u>			
금액	● <u>최소 건당 50 만원</u>			
제외요건	● <u>전 채널의 거래를 인정하되, 다음의 경우 제외함</u> - <u>창구직원에 의한 단말거래 (단, 창구거래 중 급여 다건 입금은 인정)</u> - <u>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 (단, 타인에 대한 '이체'거래는 인정)</u> ● <u>가맹점대금, 대출연동, 타발송금 등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는 제외</u> ● <u>본인거래로 추정되는 거래 제외 (예시: 예금주명 적요)</u>			

<u><신설></u>	(주2) <u>급여 인정 기준 :</u> ① <u>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*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</u> (ex. *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상여, 성과, 보너스, SALARY, PAY 등/ 등록직장명) ② <u>회사에 의한 '급여코드'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</u> ③ <u>손님이 '급여일'을 지정(등록)하고,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</u> ※ <u>본인거래 및 비급여성(카드대금, 보험료 등) 거래, 자동화기기 입금분,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</u> ※ <u>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</u>	
2.<생략> - <생략> - 다른은행 CD/ATM을 이용한 <u>KEB</u>하나은행 계좌 의 출금수수료 면제 (월10회) 부칙 (제정)~부칙(3) <생략> <u><신설></u>	2.<좌동> - <좌동> - 다른은행 CD/ATM을 이용한 <u><삭제></u>하나은행 계좌의 출금수수료 면제 (월10회) 부칙(제정)~부칙(3) <좌동> 부칙(4) <u>이 특약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기가입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</u>	사명변경 부칙추가